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공고 제2026-112호

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1. 12.

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창 원 지 청 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인

1. 건명: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거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 대상자 명단)
4. 공고 기간: 2026. 11. 12.~2026. 11. 26. (15일간)
5. 일반회계 과태료 반환금 납부 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**창원지청 고용관리과(3층)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**
6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고용관리과(Tel. 055-239-652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